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은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800

발의연월일: 2022. 10. 13.

발 의 자:이은주·강민정·강은미

김미애 • 류호정 • 배진교

심상정・양정숙・용혜인

장혜영 · 조은희 · 최혜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지방공 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서울교통공사 역사에서 스토킹범죄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는데,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해당 연도에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음.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은 직무상 다양한 개인정보등에 접근할 수 있고, 스토킹범죄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도 성폭력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, 스토킹범죄자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상의 음란물 유포 등의 죄 및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상의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음란물유포와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6호의3 등).

법률 제 호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6호의3 중 "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"를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"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
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 토킹범죄

제61조제1호 단서 중 "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"를 "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·제3호,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제6호의3 및 제61 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31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	
공무원이 될 수 없다.	
1. ~ 6의2. (생 략)	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	6의3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</u>
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	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
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	
<u>서</u>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	
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	
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
<u> <신 설></u>	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
	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
	따른 성폭력범죄
<u><신 설></u>	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
	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
	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
	제3호에 규정된 죄
<u> <신 설></u>	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
	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
	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6의4. ~ 8. (생 략)	6의4. ~ 8. (현행과 같음)
제61조(당연퇴직) 공무원이 다음	제61조(당연퇴직)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	

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1.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제31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 람으로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 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, 제3 1조제5호는 「형법」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, 「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」 제2조, 「아동·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 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.

1
<u>「성폭</u>
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
레법」 제2조, 「정보통신망
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
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
호·제3호, 「스토킹범죄의 처
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
<u>2호</u>
o (청체고 가 O)
2. (현행과 같음)

2. (생략)